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규남 의원 외 21명

나. 의안번호: 제3497호

다. 발의일자: 2026년 2월 9일

라. 회부일자: 2026년 2월 12일

2. 제 안 이 유

-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, 특히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장례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- 서울시민의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」에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, 예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이를 통해 반려동물 생명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반려동물 ‘장례문화’를 정의함(안 제2조제17호 신설).

나. ‘반려동물장묘시설’을 ‘공설동물장묘시설’로 용어를 수정함(안 제30조제1항).

다.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, 정보 제공, 교육·홍보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30조제4항 신설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동물보호법」 등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(비대상사유서) 참조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- 「동물보호법」 제71조(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)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는 동 조례 제30조에 ‘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 장묘·장례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“장례문화”를 정의하고 “반려동물장묘시설”을 법적 용어인 “공설동물장묘시설”로 변경하며, 장묘시설의 이용과 정보제공,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및 생명 존중 문화를 함양하는 측면에서 이견 없음.
- 한편, 서울시는 동 조례 제25조와 제25조의2를 통해 사회적 약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부터 반려동물 장례비를 마리당 15만원씩 지원¹⁾해 오고 있음.

1) '25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 계획(동물보호과-5829호(2025.3.21.))

-지원범위: 영습, 추모예식, 화장 및 수·분골, 봉안 및 인도(기본유골함 제공),

-소요예산: 750만원 ※반려동물 장례비(마리당 평균)는 약 38~45만원 수준.

서울시 보도자료(2025.4.1.), “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부담 덜어드려요”